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7일, 최수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8.) 상정/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0.)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수진의원)

국가 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연구자산 등의 유출 사례 및 탈취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도입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연구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상황임.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연구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연구보안 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일반과제와 구분하여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의 분류 근거와 보안과제 수행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임. 또한, 연구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보안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명현)

개정안은 범부처 보안지침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일반과제-민감과제-보안과제’의 3단계 보안과제 분류체계를 통해 맞춤형 보안조치 및 관리를 적용하고, 보안과제 관련 성과의 소유권의 무분별한 이전 및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연구자산을 보호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보임.

또한, 보안 관련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일관성과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안과제와 민감과제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위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 손실 등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을 포함한 명확한 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